정보관리규정

개 정 1998.9.11 개 정 2003.2.7 개 정 2008.9.29 개 정 2012.3. 7 개 정 2018.8.30 전부개정 2021.12.27 개 정 2022.12.29 개 정 2023.12.11 (ICT총무처 ICT인프라팀 042-600-8099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, 「전자정부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보화운영

정보화설비를 사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정보화개발

정보화설비를 사용하여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.

3. 정보화설비

서버, 네트워크장비, 개인용 컴퓨터, 정보보안시스템 및 그 주변기기 등을 말한다.

4. 정보화담당부서

공사의 정보관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하는 부서를 말한다.

5. 정보화담당부서장

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보화 담당부서의 정보관리 업무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을 분장 업무로 갖는 부서장을 말한다.

6. 정보보안

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·가공·저장·검색·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·위변조·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다.

7. 정보보안담당부서

공사의 정보보안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, 보안시스템의 운영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.

8. 실무부서

정보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부서를 말한다.

9. 정보화설비 운용부서장

정보화설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무부서장을 말한다.

10. 정보처리요워

시스템(SYSTEM) 개발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.

11. 프로그램

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보화 설비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.

12. 전산기계실

각종 전산장비 및 항온항습기, 무정전 공급장치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.

13. 데이터

프로그램 실행의 결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.

14. 개인정보
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-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5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

15. 가명처리

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
16. 정보기술아키텍처

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, 응용, 데이터, 기술,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.

17. 지능정보화

정보의 생산·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·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·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계획수립 및 정보화개발

- 제3조(정보관리 업무계획) ① 정보화담당부서장은 계획적인 정보관리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관리 업무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정보화 개발계획
 - 2. 정보화 설비의 도입 및 구성계획
 - 3. 정보처리요원의 확보 및 교육계획
 - 4. 소요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
 -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제 1 항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차년도 연간업무계획(이하 "연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4조(대상업무) 정보화 대상업무는 경제성, 능률성, 신속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.
 - 1. 계산, 기록, 분류, 통계 등의 단순작업의 업무
 - 2.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비능률, 비경제적인 업무
 - 3. 경영전략 및 경영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
 - 4. 기타 정보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- 제5조(개발방법) ① 정보화 개발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개발추진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정보화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1. 위탁개발 :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 - 가. 업무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경우
 - 나. 기타 자체 개발이 어려운 경우
 - 2. 공동개발 : 공동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.
 - ② 정보화 개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ISO "정보시스템 개발" 지침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6조(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·운영) ①정보화담당부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45조에 따라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·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·발전시켜야 한다.

제 3 장 정보화 추진체계

- 제7조(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) ①공사 정보화 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·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정보화담당부서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.
 -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무
 - 1. 공사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 - 2. 공사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
 - 3. 공사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
 - 4. 공사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
 - 5. 공사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
 - 6. 공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·관리
 - 7.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
 - 8. 정보화교육 등 공사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
 - 9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관리·활용
 - 10. 공사 소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
 - 11. 그 밖의 공사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
 -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 2 항 각 호의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8조(정보화추진위원회) ①정보화 정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 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라 한다)를 운영한다.
 - ②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1. 위원장 : 정보화담당본부장
 - 2. 위 원 :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5인 이내
 - 3. 간 사: 정보화담당부(팀)장
 - ③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중•장기 정보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2.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의 타당성
 - 3. 정보화추진상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
 -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⑤위원장은 제 1 항 중 경미한 사항은 제 11 항에 정한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⑦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 12. 11>
- ⑧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.
- ⑨위원회에서 심의 · 의결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- ⑩위원회에 부의될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제 5 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수 있다.
-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담당부서장이 되며, 위원은 각 부서 부(팀장) 또는 부(팀원)으로 구성하되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공동개발조직의 구성 및 운영
- 2.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- 3. 단위 부서에 한정된 정보시스템 구축의 타당성
- 4. 기타 정보화 관련 사항
- [3]정보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내 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9조(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) ①정보화담당부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(이하"과업심의위원회"라 한다) 를 둔다.
 - 1.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
 - 2.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·계약기간 조정
 - ②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③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 12. 11>
 - ④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0조 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) ① 제8조에 따른 "정보화추진위원회" 및 "정보화추진 실무위원회", 제9조에 따른 "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"(이 세 개 위원회를 통칭해서 "위원회"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장 또는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신설 2022.12.29>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-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신설 2022.12.29>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2.29>
- ④ 위원회 운영 담당자(이하 "담당자"라 한다)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해당되는 자가 과제를 제안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동 지침 제4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2.29>
-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12.29>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4.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 4 장 프로그램 및 데이터관리

- 제11조(프로그램등록) 정보처리요원은 프로그램작성 및 시험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프로그램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이를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. 등록된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12조(프로그램 신규개발) 실무부서장은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그 규모를 파악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요청서(별지 5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프로그램 추가개발·수정) 개발된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추가개발 또는 수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추가개발·수정의뢰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프로그램 관리) ① 프로그램은 정보화담당부서장이 프로그램 관리대장(별지 제4호 서식)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. 다만, 프로그램의 운용이 당해 업무주관부서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의 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.
 -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데이터보존) ①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데이터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데이터의 보존기간은 수록내용에 따라 문서규정의 문서 보존기간에 준한다.

제16조(데이터관리) ① 정보화담당부서장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다.

- ② 데이터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 명세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데이터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입력 데이터가 다량인 경우 정보화담당 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17조(작업의뢰) 실무부서는 정보화처리를 위하여 작업을 의뢰하고자하는 경우 정보화작업의뢰서 (별지서식 제3호)를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정보화설비 보급 및 관리

제18조(정보화설비 보급) ① 업무목적으로 정보화설비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예산편성 전까지 그 소요를 파악하여 정보화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소요를 종합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정보화설비도입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전산기계실의 정보화설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ISO "정보자산 관리" 지침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9조(정보화설비 관리) ① 각 부서에 설치된 정보화설비는 해당 부서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- ② 정보화설비 장애 발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ISO "정보시스템 장애관리" 지침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20조(정보화설비 이용) 정보화설비의 이용시간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으로 한다. 다만, 근무시간의 및 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1조(정보화설비 운용책임자 임명) ① 정보화설비운용부서장은 정보화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설비 운용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정보화설비 운용책임자는 운용부서 부서장으로 하고 부는실무책임자로 한다.
 - ② 정보화설비 운용책임자의 역무
 - 1. 정보화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.
 - 2. 정보화설비 장애 시 정보화담당부서장의 지시 및 협조하에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3. 정보화설비운용 책임자는 정보화설비 수급에 변동이 있을 시는 ISO "정보자산 관리"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4. 정보화설비의 잠금장치, 암호장치, 보조기억장치 보관 및 사용에 대한 보안사항을 확인·감독한다.

제 6 장 전산기계실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

제22조(전산기계실 관리)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전산기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주변장치 및 통신시설에 대한 주기적 예방점검 및 정비
- 2. 전산기계실 내의 적정 온 · 습도 및 청결유지
- 3. 전산기계실 보안 및 안전관리
- 4. 소모품의 적정공급 및 관리
- 5. 기타 부대설비 등 전산기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
- 6. 기타 전산기계실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23조(안전대책 수립)** ①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천재지변 등 재해에 대비한 정보화설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화담당부서장은 시스템자원을 주기적으로 백업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중요자원은 서로 다른 장소에 이중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③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와 관한 세부사항은 ISO "정보시스템 장애관리" 지침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7 장 정보화 업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

- 제24조(정보보안) ① 정보화설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보처리된 자료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ISO "정보보안업무" 절차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25조(개인정보 보호) ① 공사에서 처리되는 정보화 업무 중 제2조1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'개인정보'에 해당되는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②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ISO "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" 지침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프로그램 (신규•변경) 등록신청서

1. 등록일: 년 월 일

2. 등 록 자

- 직 급:

-성명:

3. 관리부서 :

4. 관리자:

- 직 급:

-성명:

5. 프로그램명 :

6. 용 도:

7. 개발언어 :

8. 사용대상 :

9. 사용자수 :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의뢰 부서			프로그램 □ 신규/개발의뢰서		정보담당 부서		
담 당	부 서 장			추가		담 당	부 서 장
				' ´' 수정			
프로그램명	3	.1			요청부서		.1
요청일자					실무담당자		
요청내용						접수번호	
						접수일	
						담당자	
						관련 시스템명	
						검토 완료일	
						결재 (Y/N)	
						착수일	
						TEST일	
						완료일	
						개발/수정	· 사유

작 업 의 뢰 서 (작업분류 기재)

구 분		세 부 내 용						
	의 뢰 일 시	의 뢰 부 서						
의뢰부서	담 당 자	(TEL:)						
	완 료 기 한	※ 정보담당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기재						
	의 뢰 내 용	※작업분류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된 실무양식 적용						
	작업완료일시							
정 보 담 당 부 저	작 업 내 용							
	작업 담당자							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프로그램 관리대장

○ 시스템명 :

등록번호	프로그램명	용도	운영 부서	등록 일자	신규/폐기 구분	개발 언어	사 용 대상	사용자 수	등록자	운영자	확인자

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요청서

안건명	000000					
사업기간	2018.00.00 ~ 2018.00.00 (총 00개월)	제안부서				
사업예산	총 000,000천원					
제안사유, (현황 및 문제점), 추진배경, 사업내용 등						
기대효과						
검토의견	정보화부서 담당자 검토 내용 정보화부서 담당자가 없을 경-					